

제 1221 호
1985. 11.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
편집인 : 공 모 관 이 광 우
전화 : 731-6111-3
주소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 735-3337

계	보도국장	공보국장	공보관	공람

시 보

차 례

- ◎ 조 례
 - 제 2032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033 호 : 서울특별시사면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034 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 ◎ 고 시
 - 제 801 호 : 무교제 14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7
- ◎ 공 고
 - 제 71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1
 - 제 71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2

< 이 면 계 속 >

명										
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45

제 715 호 : 공산품 품질검사 불합격 상품광고 13

◎ 예 규

제 471 호 :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중개정규정 14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1.28.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2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중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11.28.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3 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시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를 “기획관리실장, 위촉직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 6 조 제 2 항중 “기획담당관”을 “시정개발담당관”으로 “기획관리계장”을 “시정연구계장”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위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11.28. 서울특별시장</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	--

◎ 서울특별시조례 제 2034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국별 "공보관" 다음에 "올림픽준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올림픽준비단	1. 불교단체 (사찰) 등록	○ 불교재산관리법제 6 조	구청장
	2. 주지 또는 대표임원의 취임등록	○ 동법시행령제 4 조	구청장
	3. 사찰재산처분허가등	○ 불교재산관리법제 9 조제 2 항	구청장
	가. 사찰경내건물, 경내지 사용폐지	○ 동법시행령제 5 조	
나. 예산범위내 차입 및 채무보증	○ 불교재산관리법제 11 조제 1 항제 1 호	구청장	
다.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과 용도불사찰목적 이외의 목적에 제공	○ 불교재산관리법제 11 조제 1 항제 3 호	구청장	
라. 허가받은자의 허가위배행위 및 허가조건위반시	○ 불교재산관리법제 11 조제 1 항제 4 호	구청장	
		○ 불교재산관리법제 11 조제 2 항	구청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허가취소 4. 사찰현황신고 및 보고 가. 재산목록제출 나. 중대한 재산이동증감 신고 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예산신고 라. 회계년도수입지출결산서 제출 5. 음반판매업자의 등록 6. 음반판매 또는 배포자에 대한 업무보고의 요구와 사용등이 금지된 음반의 전품수거 및 음반판매 또는 배포에 관련된 사항의 검사 7. 위법음반판매 배포금지 명령 및 위법음반봉인	○ 불교재산관리법제 14 조 ○ 불교재산관리법제 15 조제 1 항 ○ 불교재산관리법제 15 조제 2 항 ○ 불교재산관리법제 15 조제 3 항 ○ 음반에 관한 법률제 7 조의 2 ○ 동법시행령 제 7 조 ○ 음반에 관한 법률제 11 조 ○ 음반에 관한 법률제 11 조의 2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별표 산업경제국증 "제 41 호" 내지 "제 5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업 경 제 국	41. 공산품품질검사 불합격 공산품의 판매 또는 진열에 대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 42. 공산품품질표시품목, 품질검사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및 조사	○ 공산품품질관리법제 6 조제 3 항 ○ 동법시행령제 18 조제 3 호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 동법시행령 제 18 조제 4 호	구청장 구청장

구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43. 공산품 판매 또는 판매 를 위한 진열금지의 해제	○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제 5 조 ○ 동법시행령제 18 조제 5 호	구 청 장
	44. 공산품품질표시명령	○ 공산품품질관리법제 4 조제 1 항 ○ 동법시행령제 18 조제 1 호	구 청 장
	45. 전기용품제조업자, 판매 업자등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2 조 ○ 동법시행령제 18 조제 4 호	구 청 장
	46. 전기용품기술기준 및 승인 표시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의 수거 또는 파기명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 23 조 ○ 동법시행령제 18 조제 5 호	구 청 장
	47.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 의 허가, 제조업의 휴폐 지등의 신고수리 및 허가 취소 또는 그 정지명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9 조 제 1 항및제 22 조와 제 23 조 ○ 동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4 호	구 청 장
	4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3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명령, 검사의 실시, 시료제 공의 요구와 열사용 기 자재의 파기, 수거 또는 제조방법 개선의 명령 (단, 지정에너지관리대상 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시공업자에 대한것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3 조 ○ 동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 제 6 호	구 청 장
	49.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 공업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 명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7 조 및 제 30 조 ○ 동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5 호	구 청 장
	50.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 고수리와 지정 및 지정취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0 조 및 제 12 조	구 청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 동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	
별표 도시계획국중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국	7.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의 수리, 권고 및 선매자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공업지역 : 5,000 ㎡ 녹지지역 : 3,300 ㎡, 기타 지역 : 1,650 ㎡ 이하에 한함)	○ 국토이용관리법제 30 조의 2 제 2 항	구청장
별표 건설관리국중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진 설 관 리 국	10. 주택자재생산업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	○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 ○ 동법시행령 제 45 조	구청장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고 시</p> </div> <p>◎ 서울특별시고시제 801 호</p> <p>무교제 14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 획 인 가 고 시</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439 호 (81.12.</p>		<p>21.)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무교제 14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동 시행령제 58 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제 4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11.28.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개요 가. 사업의명칭 : 무교구역 제 14 지구 재개발 사업</p>	<p>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3 외 5필지 다. 시행면적 : 7,435.9㎡ 라. 시행자 주소성명</p>
<p>성 명 (주) 서울신문사 사장 이우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홍 두표</p>	<p>주 소 서울중구 태평로 1가 31-3 서울중구 태평로 1가 31-2</p>
<p>마. 사업시행 기간 1981.12.21-1985.12.31 바. 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1) 대 지 : 1필지 6,728.9㎡ 2) 건축시설 : 1동 659,004.19㎡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2층 (옥탑 2개층 포함) ○ 용 도 : 신문사, 프레스센터, 사무실 등 2. 분양설계 가. 대 지 시행구역내 6필지 7,435.9㎡ (2,249.4평)중 공공시설 용지 707㎡ (213.9평)을 제외하고 1필지로 지적 정리하며 본 사업 시행에 투자된 사업비중 분양대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나. 건 물 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건축물 59,004.19㎡ (17,849평)을 다음과 같이 분양한다.</p>	<p>1) 전용면적의 배분은 지하층의 신문인쇄실, 지하상가, 1층 전시실, 지상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는 서울신문사 소유로하고 지상 12층부터 옥탑층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소유로 한다. 2) 전 공유면적 22,226㎡ (기계전기실, 주차장, 방재센터, 로비 화장실, 공조실, 에레베이터코어등)의 배분은 전 면적에 대한 분양 비율이 정산비율과 같아지도록 각각 분양한다. 다. 소수점이하의 유효처리 소수점이하의 유효처리는 토지(대지)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까지 유효숫자로 하며 건물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한다.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 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별첨 1 5.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 별첨 2</p>

6.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중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별 첨 3
7. 법제 43 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법 : 해당 사항 없음
8.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별첨(8쪽)
9.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와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조합원의 주소, 성명 : 해당 사항 없음.

별첨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중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중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	지 번	면 적 (㎡)		평 가 액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계
(주)서울신문사	태평로1가 31-3	3,411.6	9,589.66	8,565,600,000	1,159,920,530	9,725,520,530
	태평로1가 31-2	2,023.1	5,031.43			
한국방송광고 공사	태평로1가 25	1,383.8	2,733.93	6,379,178,752	360,076,900	6,739,255,652
계		6,818.5	17,355.02	14,944,778,752	1,519,997,430	16,464,776,182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분양대상자	지 번	면 적 (㎡)		추 산 액		
		대 지	건 물	대 지	건 물	계
(주)서울신문사	태평로1가	3,505.8 (54.10%)	32,316.59 (54.77%)	8,578,148,391	14,204,023,438	22,782,171,829
	태평로1가	3,223.1 (47.90%)	26,687.6 (45.23%)	7,886,627,791	13,350,157,311	21,236,785,102
		6,728.9	59,004.191	6,464,776,182	27,554,180,794	44,108,956,931

별첨 2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분양대상자	중건토지 및 건축물명세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 번	토지(㎡)	건축물(㎡)	권리종목	성 명	주 소
(주)서울신문사	중구태평로1가 31-3	3,411.6	9,589.66	근저당	농협중앙회	중구충정로1가75
					한일은행	중구남대문로2가13
	소 계	3,411.6	9,589.66			
한국방송광고공사	중구태평로1가 31-2	2,023.1	5,031.43			
	중구태평로1가 25	1,383.8	2,733.93			
	소 계	3,406.9	7,765.36			

별첨 3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가. 명 세

소유자	지 번	면적(㎡)		평가액	시 고
		건물	도로		
김영일, 조기호	태평로1가25	7		847,000	
서울시	태평로1가25-2		20	170,000,000	
	태평로1가19-3		32.8	278,800,000	
합 계		7	52.8	449,647,000	

나. 청산방법

1) 김영일, 조기호 :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지하상가 입주(임대)토록 조치하므로써 청산에 가름함. (동의서 첨부)

2)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유도로 2필지는 도시계획법 제 83조 2항에 의거 불환지 처분함. (무상양어)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71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47 호 (74.4.20) 호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망우동 95-1 호외 1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 한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

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란다.

1985.11.28

서울특별시장

공 랑 요 지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동 95-1 호외 1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망우동 95-1-3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폭 6 m 길이: 65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19 일 이내 - 85.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
8. 공람장소: 동대문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9. 공람기간: '85.12.2-'85.12.16(14 일간)
10. 기타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문의·바람.

토 자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재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관계인주소성명	권리명세
1	망우동 95-1	전	212 ㎡	약 47 ㎡		망우동 95-1 차왕수 외 3인	
2	망우동 95-3	도로	271 ㎡	271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71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08 호 (75.6.23) 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면북동 1049 의 605 의 20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

소로 제출하기 바람

1985.11.28.

서울특별시장

공 랑 요 지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면북동 1049 의 605 - 장안동 471 의 1 호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면북동 1049 주변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폭 20 m 길이 616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0 일 이내 - 198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8.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85.12.2 ~ '85.12.16.
10. 기타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람.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재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1	면북동1049-605	답	260	260		국	없음
2	1049-591	도로	122	122		국	"
3	1049-115	전	1,559	1,559		동양척식주식회사	"
4	1049-88	도로	122	122		국	"
5	1049-20	답	352	352		동양척식주식회사	"
6	1049-114	전	1,507	1,507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재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설명	소유권이외
						관계인주소설명	의권리명세
7	1049-1108	하천	202	202		국	없 음
8	1049-672	전	235	235		국 (관리청채신부)	"
9	1049-1112	하천	62	62		국	"
10	1049-113	전	1,261	1,261		국 (관리청채신부)	"
11	1049-112	전	337	337		동양척식주식회사	"
12	1049-1113	하천	63	63		국	"
13	1049-111	유지	440	440		동양척식주식회사	"
14	1049-1150	"	245	245		국	"
15	1049-109	전	1,239	1,239		동양척식주식회사	"
16	1049-1151	하천	77	77		국	"
17	1049-1152	하천	145	145		국	"
18	1049-108	전	1,389	1,389		동양척식주식회사	"
19	1049-107	전	136	136		"	"
20	1049-1153	하천	26	26		국	"
21	장안동 473-1	도로	717	717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715 호

공산품품질검사불합격상품공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 조 규정에 의
하여 '85 하반기 검사지정 상품에 대

한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된 상품을
동법 시행령 제 5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11.28.

서울특별시장

○ 불합격 상품내역

등록번호	소재지	상 호	대표사	불합격 상품명	조치내용	금지기간
7-182	중계동 463-14	상계건재	오재선	세멘트 기 와	판매 및 진 열금지	'86 상반기 정기검 사결과통보시까지
7-88	하계동 238	대원산업	김재봉	세멘트 블 락	"	"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제 471 호

서울특별시채비자관리및처분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채비자 관리 및 처분규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5.11.28.

서울특별시장

제 7 조 3 항중 “가격의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를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 11 조제 1 항 1 호중 “현금예치증” 다
음에 “(년회(年回), 차수(次數))
및 시행일자 명기)”를 삽입한다.

제 11 조제 1 항제 5 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독
입찰이나 단독절차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제 14 조제 2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각대금 일시불 기간은 60 일
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대
금을 완납할 때에는 계약액의 20
%를 공제한 금액을 토지대금으
로 징수하고, 30 일경과 60 일까
지는 계약액 전액을 징수하며
60 일경과시는 년 20 %의 연체이
자를 가산 징수하고 6개월 경
과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학
교용지 대금에는 20 %공제를 하
지 아니한다.

부칙('85.2.1) 제 3 조중 “매각가격에
서 20 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매
각대금으로 하여”를 “매도가격에
서 30 %를 공제한 잔액을 실수
납액으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
에 계약 또는 매각한 채비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